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이개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1.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 11.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개호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소독업을 폐업하려고 하

는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함.

그런데 소독업의 경우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업 등 타 업종과 달리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 때문에 기존 소독업자가 타인에게 소독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이 먼저 폐업신고를 한 다음 양수인이 새로운 영업신고를 해야만 하는 상황임.

이에 소독업의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의 불편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개정안과 같이 지위승계 규정을 법규정에 명시할 경우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기존 소독업 폐업 및 신규 소독업 개설에 드는 불필요한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인 편의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배당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제52조의2제2항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 중 ‘양도’는 ‘환가(換價)’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겠으며, 개정안 제80조제8호의2에서는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법 같은 조 제8호에서는 ‘소독업 신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득업을 영위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구를 일치시킬 필요도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